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시행 2017.7.1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9호, 2017.7.1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
2.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제3조(발효처리 승인)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					
농장명 (농장주)		축종		사육 두수(수수)	
농장 주소					
해당 가축전염병				살처분 대상 두수(수수)	
재활용 사유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3조제1항에 따라 상기 농장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생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가축 사체 처리계획 : 처리일시(기간), 장소, 방법, 해당 병원체 사멸 확인방법 등 2. 발효처리 시설(장비) 제원 및 특성 : 처리용량 및 시간, 해당 병원체 사멸원리 등 3. 발효처리 생산물 처리계획(재활용 계획)				